

주택연금 주민등록 이전 승인에 대한 안내말씀

<주택연금 주민등록 이전 승인이란?>

입원·요양원 입소, 자녀봉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

1. 신청대상

- 부부 중 1인에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*가 있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 이전을 희망하는 고객

* 입원·요양시설 입소, 자녀봉양, 관공서에 의한 격리·수용·수감, 기타 공사가 인정한 경우

2. 신청방법

-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입증서류 및 신청서류 구비하여 담보주택 관할 지사등에서 신청

구 분	내 용
입증서류*	입원 확인서 / 입소 확인증 / 병원 진단서 / 장기요양인정서 관공서에 의한 격리·수용·수감 등 사유별 공문서 등
신청서류	주민등록 이전 신청 및 확인서(공사 양식) / 신분증 사본
승인기간	2년 이내 (4개월~24개월 중 개월 단위로 선택가능)

* 개인(민감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선택적 동의) 징구

3. 유의사항

- 주민등록 이전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 이전 승인기간의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승인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입증서류 및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여 사후점검을 받아야 하며, 승인기간 만료 전까지 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승인기간 만료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신 경우, 승인기간 만료 시 주택연금 담보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셔야 하며, 담보주택 임대(연장 포함)를 하실 수 없습니다.
- 승인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시는 등 약정 사항 위반 시 지급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전 승인 후 공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택 전부를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로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반드시 공사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*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맡겨야 함